



전기매트 · 전기스토브 사용시 감전 · 화상 주의 필요

- ▶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(원장 金惠琬)에서는 겨울철에 사용이 많이 되는 전기매트와 전기스토브 46개 업체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화재 · 감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조사하고,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3개 업체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.
- ▶ 전기용품은 손가락이나 금속핀 등이 접촉되었을 때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, 전기가 통하는 금속부분은 제품외곽으로부터 일정간격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.
 - ① 이번 조사결과, 전기매트의 경우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4개 업체(21%) 제품이 온도조절기 뒷면에 구멍이 있어, 금속 핀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쉽게 닿을 수 있었고
 - 5개 업체(26.3%) 제품은 전자파 제거스위치가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접촉되어있거나, 온도조절기 내부 부품간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또한, 온도조절기에 부착된 컨넥터의 금속부분은 외곽으로부터 8mm 이상의 절연거리를 갖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8개 업체(42%)제품의 절연거리가 1~3mm정도에 불과해,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 - ② 전기스토브의 경우에는, 사용시 화재 · 화상 등의 방지를 위하여, 스토브를 계속 켜둔 상태에서 정면 50cm 거리에서의 온도상승값을 70K이하로 제조하도록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.
 - * K : 주위온도를 제외한 온도상승값
 - 조사대상 27개 업체 제품의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, 5개 업체(18%) 제품의 온도상승값이 82~130K정도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▶ 기술표준원은, 전기매트를 사용할 때에는 감전사고예방을 위하여, 금속으로 된 스위치나 나사부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 것과, 온도조절기의 컨넥터 부분이나 온도조절기 뒷면구멍에 금속 핀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,
 - 전기스토브를 사용할 때에는 화상방지를 위하여 너무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이번 조사결과를 홈쇼핑업체 등 유통업체에 통보하여 인증이 취소된 불량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, 시 · 도지사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,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 · 파기토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| '05년 시판품조사 결과(겨울용품) |

▶ 전기매트

- 대상업체 : 19업체(국내산)
- 조사결과
 - 감전보호, 절연거리, 온도상승 등 8업체(42.1%) 안전기준 미달

조사업체	부적합내용						표시사항	조치사항
	전원 코드	소비 전력	절연 내력	충전부 보호	절연 거리	온도 상승		
19	4 (21%)	3 (15.7%)	5 (26.3%)	4 (21%)	8 (26.3%)	5 (42.1%)	8 (42.1%)	인증취소 :8 (42.1%)

* 동일업체 제품이 다수 항목에서 불합격된 경우 부적합내용 중복표시됨

▶ 전기스토브

- 대상업체 : 27업체
- 조사결과
 - 소비전력, 온도상승 등 9개업체(33.3%) 안전기준 미달

조사업체	부적합내용			표시사항	인증취소
	전원 코드	절연 내력	절연 거리		
27	2 (7.4%)	3 (11.1%)	5 (18.5%)	4 (14.8%)	인증취소 :5(18.5%) 개선명령 :4(14.8%)

* 동일업체 제품이 다수 항목에서 불합격된 경우 부적합내용 중복표시됨

※ 문의 :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
배승진 과장, 윤기환 연구관(509-7235)